

<p>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듣고 深度 있는 審査를 하였던 바, 그 주된 內容은 1993年 8月 14日 上位法인 道路法施行令이 改正됨에 따라 道路占用料 算定基準이 變更되었고, 그에 따른 陸橋使用料를 調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p> <p>改正된 道路法施行令上 徵收할 수 있는 金額은 陸橋 1個所當 平均使用料가 約 11萬 8,600원 정도로 調査되었으나, 現行 條例에 의거 徵收하고 있는 金額이 2萬 1,000원인 점을 勘案하여 大幅의인 引上 增격을 완화하고, 현재보다 3萬 7,800원이 增額된 5萬 8,800원을 徵收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쉽다고 審査하여 저희 建設委員會에서는 本 改正案을 滿場一致로 可決하였습니다.</p> <p>同僚議員 여러분, 자세한 內容은 配付하여 드린 油印物을 參照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지금까지 報告드린 內容대로 서울特別市陸橋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을 여러 議員님께서도 當 委員會에서 審査한 대로 滿場一致로 可決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審查結果 報告를 마칠겠습니다.</p> <p>대단히 감사합니다.</p> <p>○議長 白昌鉉 金容一議員님 수고하셨습니다.</p> <p>그러면 建設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 서울特別市陸橋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을 議決하고자 합니다.</p> <p>議員님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p> <p>.....</p> <p>(參 照)</p> <p>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제3항중 “별표 2의”를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별표 1의 3호를 적용한 점용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으로 한다.</p>	<p><별표 2>를 삭제한다.</p> <p>부 칙</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육교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육교사용허가 신청이 접수된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hr/> <p>11. 서울特別市再開發事業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p> <p>12. 서울特別市都市開發公社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p> <p>13. 서울特別市住居環境改善事業施行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p> <p>(16時)</p> <p>○議長 白昌鉉 다음은 議事日程 第11項 서울特別市再開發事業條例中改正條例案과 議事日程 第12項 서울特別市都市開發公社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그리고 議事日程 第13項 서울特別市住居環境改善事業施行條例中改正條例案, 이상 3件을 一括上程합니다.</p> <p>(議事棒 3打)</p> <p>都市整備委員會 金鍾源議員님 나오셔서 審査結果를 一括하여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金鍾源議員 都市整備委員會所屬 金鍾源議員입니다.</p> <p>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本議員이 우리 都市整備委員會에서 審査한 서울特別市住居環境改善事業施行條例中改正條例案과 서울特別市再開發事業條例中改正條例案, 그리고 서울特別市都市開發公社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등 市長이 要求한 3件의 條例改正案에 대한 審査報告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p> <p>3件의 條例改正案 審査內容을 條例案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서울特別市住居環境改善事業施行條例中改正條例案을 改正하고자 하는 主要骨子는 住居環境改善事業 施行節次를 簡素化하여 住民의 불편을 解消하고, 建築法令의</p>
---	---